●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933)

2020.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33

Ⅰ.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은주 의원 발의(찬성 10명)

나. 제출일자 : 2020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동물병원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 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로 인하여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양산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협약 및 지원

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및 제5조)

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해진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진료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반려동물 소유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 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로 인하여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양산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선을 하고자 함.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 제정안 제3조는 시장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을 위해 시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협약 및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4조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 표시 등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5조에서 제4조에 따른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반려동물 진료비에 관하여

○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매우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유기견 혹은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및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함.

< 조 사 개 요 >

▸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방문 조사
· 조사 대상 : 서울 및 경기 등 총 10개 구
· 조사 기간 : 2019년 11월 1일 ~ 15일
· 조사 기준 : 개(5kg 미만)
· 조사 항목 : 진료비, 중성화 수술, 검사, 예방접종, 치과 진료 등
* 동물병원 가격 조사 결과는 장비 및 기본 시술 범위에 따라 차이 존재

▸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
· 조사 기간 : 2019. 11. 11.~2019.11.14.(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결과,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18%에 불과했고, 병원별로 가격 편차는 발치가 최대 80배, 치석제거가 최대 35배 등 치과 관련 진료항목 가격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성화수술의 경우 병원별로 약 5배 차이가 났고,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4.7배까지 차이가 났음.

-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로 1회 평균 74,700원 지출하며 약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진료비 항목과 처치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영수증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상세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25%에 불과함.

○ 사람의료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진료에서도 전문가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과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온전한 시장경제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우려 또한 존재함. 이러한 상황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진료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음.

○ 동물병원 진료비가 고가라는 인식은 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경험과 비교하여 도출된 소비자들의 인식에 기반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 중 일부 인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이 매달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임으로 결국 의료서비스에 지불되는 의료비는 매달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인식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함으로 인해 동물병원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함.

라.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크게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음.[1)]

1) 농림축산식품부(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	각 동물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정해진 치료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 (유사사례 : 사람의 비급여 공시제의 초기형태)
평균진료비용 공시제	별도 기관이 개설된 동물병원들을 샘플링하여 평균적인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 하지만 공개되는 평균적인 진료비용을 개별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동물병원들이 참고를 하여 가격 책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평균 비용을 참고로 하여 본인에게 적정한 가격의 동물 병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적정가격 공시제	기관이 단순 평균 비용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수의사의 적정한 보상이 보장되고 또한 소비자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산출된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 하지만 평균진료비용 고시제와 마찬가지로 공개되는 적정가격을 개별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사들이 참고를 하여 가격 책정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또한 적정가격을 참고로 하여 본인에게 맞는 동물병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 본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유사한 형태로써 사람의료영역 중 초기의 비급여 공시제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함.

-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제도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외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되었음.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제도의 도입 목적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적정화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였음.

- 그러나, 2010년 공시제 도입이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대했던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개 내용이 의학전문 용어가 많고,

진료비 계산이 복잡하여 의료인의 도움 없이는 정보의 활용이 어려웠으며, 비급여 항목이 양과 질의 측면 모두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병원 간 비급여 진료수가 비교가 어려웠던 점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음.[2)]

○ 초기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서는 각 의료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고지 항목을 정하여 공개하였고,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됨.[3)]

- 이에 따라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공개항목 및 공개기관 등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고시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제와 같이 동물병원의 진료 정보를 제공하여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비급여 진료비 공시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책의 실행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적이지 못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의 의료서비스와는 다르게 동물병원 진료비의 경우 국가나 시의 공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 표시제 등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이 있음.

---

2) 한국소비자원(2011.7),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행 실태 및 소비자 활용도 조사

3) 보험연구원(201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183, 1-10

다. 타 시·도 현황

○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진, 재진료,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포함 기생충 예방, 흉부방사선 등 20개 항목의 수가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 제도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TF’를 통해서 도·시군 관계관과 경남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합의을 통해 20년 10월 일부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4)]

○ 관련하여 반려동물 진료비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협약체결 및 지원 규정,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항목별 진료비 게시, 저소득층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처리되어 있는 상황임.

라. 유관 단체 및 집행부 의견

○ 서울시 수의사협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현재 관련하여 진료비 고지 등에 관해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으로 이후 관련 사항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함.

---

4) 경남뉴스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2020년 9월 16일

<서울시 수의사협회 검토의견>

□ 조례안 관련 문제

○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조례로 논할 사항이 아니며*, 진료비 고지 등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결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영등포구청 등의 경우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음

○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서울특별시 내 동물병원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와 사전 협의 및 논의가 전문하였음

○ 조례안의 제목은 지원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자율표시제 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동물병원에는 의부를 부여하나 설치 비용 지원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명시

□ 대한수의사회 의견

○ 진료항목 표준화 완료 없이는 진료비 고시 등은 수용할 수 없어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함.

○ 본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앞서 진료체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3 종합의견

○ 동 제정안은 반려견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동물병원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의 비급여 공시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진료체계의 표준화 없이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과잉진료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수의사법」 개정 등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